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18조(전문가의 감정 등) ①법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관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(病狀)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항소 등) ①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, 그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및 변호사(이하 '법정대리인 등'이라 한다)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</p>	<p><u>제13조(전문가의 감정등)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보호치료 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4조(항소등) ①검사 또는 피보호치료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.</u></p>	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호치료청구시 첨부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참조하여 판결하되,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재감정 실시 ○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 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은 불요 <p>■ 사회보호법 제20조제7항, 제8항 규정을 따로 규정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항소할 수 있다.</p> <p>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·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·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20조(판결의 효력)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	<p>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·취하가 있는 때에는 보호치료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·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15조 (준용규정) ①제6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보호치료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②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보호치료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.</p>	<p>■ 형소법 일반원칙 규정이므로 삭제</p> <p>■ 형사소송법 제282조(필요적변론), 제283조(국선변호인) 준용규정 등 존치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21조(보조인) ①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등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그 시설의 담당 생활교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③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22조(보조인의 권한) ①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②보조인은 제30조 제1항의 가종료 등의 심사·결정상의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심문시 동석하여 피치료보</p>		<p>■ 치료보호법상 “보조인” 규정 반영 여부 검토 필요</p> <p>○ 개정 형소법에서 변호인 등의 신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할 듯</p> <p>○ 다만, 시설의 생활교사에게 참여권한을 부여할지 검토 필요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호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</p> <p>제23조(치료보호의 내용) ①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(이하 “피치료보호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.</p> <p>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3장 보호치료처분의 집행</p> <p>제16조(보호치료의 내용) ①보호치료의 선고를 받은 자(이하 “피보호치료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는 보호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.</p> <p>②보호치료시설에의 수용은 피보호치료자가 보호치료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보호치료심의위원회의 보호치료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. <u>다만,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피보호치료자의 보호치료시설에의 수용은 2년을 초과할 수</u></p>	<p>■ 치료보호법에서는 제3장에 “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”을 두고 있으나, 지정치료보호시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보호치료의 내용(사회보호법 제9조 규정)을 “보호치료처분의 집행”의 장에 규정</p> <p>■ 약물중독범 수용기간 상한 설정</p> <p>○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기간은 정신질환 특성상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24조(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) 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.</p> <p>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p> <p>③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④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</p>	<p>없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치료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없어 대다수 외국 입법례도 부정기이므로 현행 유지</p> <p>○ 단, 약물중독자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와 달리 치료기간이 단기간인 점 감안, 독일처럼 2년을 상한으로 설정</p> <p>■ 지정치료보호시설 관련 규정 삭제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, 운영, 치료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5조(지정의 사퇴) ①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6조(지정의 취소)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</p>	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</p> <p>제27조(집행지휘)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.</p> <p>제28조(집행순서 및 방법)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.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집행지휘) ①보호치료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.</p> <p>제18조 (집행순서 및 방법) 보호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치료를 먼저 집행한다. 이 경우 보호치료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.</p> <p>제19조(분리수용)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치료대상자와 같은 항</p>	<p>■ 약물중독범 분리 수용 규정 신설 ○ 특별한 사정이란, 신입자 검사의 경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29조(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)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</p> <p>제30조(소환, 치료보호집행)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.</p> <p>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.</p>	<p><u>제2호에 의한 보호치료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동을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0조 (보호치료내용등의 공개) 이 법에 의한 보호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피보호치료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치료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21조 (소환, 보호치료집행)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보호치료자에 대한 보호치료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보호치료자를 소환할 수 있다.</p> <p>②피보호치료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보호치료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.</p>	<p>우나 정신질환 증세가 병행된 약물환자 치료의 경우와 같이 혼거수용이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.</p> <p>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</p> <p>제31조(가종료등의 심사·결정) ①보호결정을 내린 법원은 제6장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를 심문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·결정한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마다 종료여부를 심사·결정한다.</p>	<p>③제2항의 경우에 피보호치료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보호치료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.</p> <p>④보호치료집행장은 보호치료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</p> <p>제22조 (가종료등의 심사·결정) 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피보호치료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,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보호치료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·결정한다.</p>	<p>■ 법원에게 심사결정권한 부여하는 규정 삭제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32조(치료의 위탁) ①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·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</p>	<p>제23조 (치료의 위탁) ①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보호치료만을 선고받은 피보호치료자가 그 <u>집행개시후 1년</u>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<u>그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</u>에게 보호치료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보호치료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보호치료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<u>그 법정대리인등</u>에게 보호치료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치료심의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보호치료자의 <u>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</u> 보호치료시설 외에서의 입원·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</p>	<p>■ 치료위탁 기간을 집행개시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</p> <p>■ 사회보호법상의 "친족" 대신 치료보호법 규정을 반영하여 "법정대리인 등"에게 치료위탁토록 규정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④치료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피치료 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부담한다. 다만, 당해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국가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보조신청과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절차, 심사의 기준 및 경비보조내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24조 (보호치료의 집행정지) 피보호치료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보호치료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치료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의한다.</p>	<p>■ 비용지급 부분 검토 필요</p> <p>○ 치료위탁에 따른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범법 정신질환자에게 대해 과도한 배려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음</p> <p>■ 사회보호법 제31조 규정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7장 피치료보호자의 수용 및 감독</p> <p>제44조(지정치료보호시설의 의무) 지정 치료보호시설의 장은 피치료보호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장 피보호치료자의 처우와 권리</p> <p>제25조 (처우)</p> <p>① <u>보호치료시설의 장은 피보호치료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, 침구 기타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피보호치료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.</u></p> <p>③ <u>보호치료시설의 장은 피보호치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하되, 보다 더 적극적으로 '처우와 권리에 관한 장'을 신설하여 인권옹호 측면 강화</p> <p>○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</p> <p>○ 의료적 처우는 의사의 조치로 시행 - 독일 행정법 제136조(정신병원수용)에서도 의사의 조치에 따를 것을 규정</p> <p>○치료 정도에 따라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 실시 원칙을 선언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45조(행동제한 등)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판결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피치료보호자의 전화통화 및 서신수발, 보호자 및 보조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<u>제26조 (접견등)</u> <u>보호치료시설의 장은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치료자의 접견, 서신의 수신과 발신,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7조 (텔레비전 시청등)</u> <u>피보호치료자의 텔레비전 시청, 라디오 청취, 신문·도서의 열람은 일과 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.</u></p> <p><u>제28조 (환자의 치료)</u> <u>① 보호치료시설의 장은 피보호치료자가 질병에 걸린 때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호치료시설의 장은 보호치료시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 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외부교통권 최대한 보장</p> <p>○자유롭고 사회친화적인 처우 실시</p> <p>○질병에 걸린 피보호치료자에게 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46조(처우개선의 청원) ①피치료보호자,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, 청원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③ 보호치료시설의 장은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자비로써 치료를 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 (근로보상금 등의 지급) 근로에 종사하는 피보호치료자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 (처우개선의 청원) ①피보호치료자,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치료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, 청원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○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근로보상금 지급규정을 법률에 명문화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47조(운영실태 등 점검 및 개선명령) 법무부장관은 매 3월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8조(개선명령) 법무부장관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검토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보호관찰</p> <p>제33조(보호관찰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이 개시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때 2.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	<p>제31조 (운영실태등 점검)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보호치료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보호관찰</p> <p>제32조(보호관찰) ①피보호치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보호치료자에 대한 보호치료가 종료된 때 2. 피보호치료자가 보호치료시설 외 	<p>■ 운영실태 점검의무를 부과되 점검기간은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축소</p> <p>■ 지정치료보호시설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개선명령 규정은 반영할 필요 없을 듯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</p> <p>②보호관찰의 기간은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시 법원에서 결정한다.</p> <p>③보호관찰이 개시된 자(이하 “피보호관찰자”라 한다)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</p>	<p>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때</p> <p>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p>	<p>■ 법원에게 심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보호관찰기간 법원 결정 규정 삭제</p> <p>■ 사회보호법상 연장규정 삭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시 사보위 결정으로 1차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나, ○ 실제 연장 사례 거의 없고,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인권침해라는 비판 여지 있으므로 삭제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를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.</p>	<p>③ <u>보호관찰이 개시된 자(이하 "피보호관찰자"라 한다)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2. 보호관찰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치료심의위원회의 보호치료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3. 보호관찰기간 만료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보호치료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<u>새로운</u>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	<p>■ 형이 병과된 피보호치료자가 가 종료되어 병과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보호관찰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</p> <p>○ '보호관찰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'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관련 해석상 가 종료된 피보호치료자가 병과형 집행을 받는 경우도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	<p>제33조(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)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.</p> <p>제34조(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)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보호치료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, 직업,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</p>	<p>어, 새로운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경우만 보호관찰이 종료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함</p> <p>■ 사회보호법 제29조 제1항 규정 준치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34조(치료보호의 집행면제 등)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35조(가종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)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제33조 제3항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·감독에 위반</p>	<p>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35조(보호치료의 종료)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보호처리가 종료된다.</p> <p>②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36조(가종료 취소와 보호처리의 재집행) 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보호처리를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1.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</p>	<p>비 고</p> <p>■ 조문 제목 변경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한 때</p> <p>2.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</p> <p>제3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장 치료보호심의위원회</p> <p>제37조(치료보호심의위원회)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</p>	<p>2. 제33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·감독에 위반한 때</p> <p>3.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보호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</p> <p>제6장 <u>보호치료심의위원회</u></p> <p>제37조(보호치료심의위원회) ①보호치료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호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<u>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</u></p>	<p>비 고</p> <p>■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 준용 규정에 일괄하여 규정함이 상당하므로 불필요</p> <p>■ 위원 구성 비율 변경</p> <p>○ 현행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3인으로 구성하고,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심의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의 종료 또는 가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및 그 취소와 가종료의 취소에 관한 사항 2.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종료,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·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.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위탁경비보조신청에 관한 심사 및 결정 	<p>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법무차관이 된다.</p> <p>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보호치료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·가종료 및 그 취소와 보호치료 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.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·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.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<p>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</p>	<p>자 7인에서 6인으로 축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의사 자격자 2인에서 전문의 자격자 3인으로 확대 ○ 치료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, 정신질환 정도를 토대로 사법판단을 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키는 부적절함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⑥심의회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8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. 이 법, 의료법, 약사법, 정신보건법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5년이 경과 	<p>는 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⑤위원회의 구성·운영·사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<u>제38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</u> <u>2.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u> 	<p>비 고</p> 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하여 신설</p> <p>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하므로 삭제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하지 아니한 자</p> <p>제39조(심의위원의 해촉) ①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<p>제40조(심의)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(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.</p>	<p>제39조(위원의 해촉) ①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<p>제40조 (심사) ①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치료자 및 피보호관찰자(이하 이 둘을 합하여 "피</p>	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하여 신설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이하 같다)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·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·심문 및 환경조사 2. 국·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·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<p>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·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, 국·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·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</p> <p>제41조(의결 및 결정)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</p>	<p>보호자"라 한다)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·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·심문 및 조사 2. 국·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·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<p>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·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, 국·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·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</p> <p>제41조 (의결 및 결정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③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치료보호자의 담당 의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치료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그리고 치료보호종료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</p>	<p>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보호치료시설의 장은 <u>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, 보호치료 종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비 고</p> 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하여 제3항, 제4항 신설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42조(심의위원의 기피) 피치료보호자, 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심의위원에게 심사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42조(위원의 기피) 피보호자, 그 법정대리인 등은 위원회 위원에게 심사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의 당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43조 (검사의 심사신청) ①피보호자의 주거지(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)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·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</p>	<p>■ 치료보호법 규정 반영하여 신설</p> <p>■ 사회보호법 제35조 규정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43조(피치료보호자 등의 심사신청) ① 피치료보호자와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·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한다.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호치료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④ 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44조 (피보호치료자등의 심사신청) ① 피보호치료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피보호치료자가 보호치료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위원회에 보호치료의 종료여부를 심사·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.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보칙</p> <p>제49조(치료보호청구의 시효) ①치료보</p>	<p>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보호치료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.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보칙</p> <p>제45조 (보호치료청구의 시효) ①보호치료청구의 시효는 보호치료청구된 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p> <p>■ 법원에게 심사결정권한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삭제</p> <p>■ 사회보호법 규정 그대로 반영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.</p> <p>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결정의 확정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50조(치료보호의 시효) ①피치료보호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.</p> <p>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가종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시효는 피치료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.</p>	<p>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.</p> <p>②보호치료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보호치료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46조 (보호치료의 시효) ①보호치료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조 제1호의 보호치료는 10년 2. 제2조 제2호의 보호치료는 7년 <p>②시효는 보호치료의 집행정지 또는 가종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시효는 피보호치료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.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	<p>제47조 (보호치료의 선고와 자격정지) 보호치료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보호 치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 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무원이 되는 자격 2.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.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<p>제48조 (보호치료의 실효) ①보호치료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 지 이상의 형 또는 보호치료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.</p> <p>②보호치료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 는 보호치료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</p>	<p>■ 사회보호법 제38조</p> <p>■ 사회보호법 제39조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제51조(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) ①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,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,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. ②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분의 관</p>	<p>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49조 (기간의 계산) ①보호치료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. ②보호치료처분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보호치료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50조 (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) ①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치료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,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의,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.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치료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</p>	<p>■ 사회보호법 제40조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군사법원,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·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.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·청구·재판·신청·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</p> <p>⑤법원·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·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. 이 경우 이송 전에</p>	<p>하여 국방부에 군보호치료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③군보호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군사법원,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치료심의위원회는 보호치료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보호치료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·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.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·청구·재판·신청·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</p> <p>⑤법원·검사 또는 위원회는 보호치료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보호치료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·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치료심의위원회에 이송한다.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·청구·재판·신청·심사 및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한 조사·청구·재판·신청·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</p> <p>제52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53조(벌칙) ①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·치료를 보증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</p>	<p>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</p> <p>제51조 (다른 법률의 준용) 보호치료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벌칙</p> <p>제52조 (벌칙) ①피보호치료자가 보호치료 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②피보호치료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폭행·협박 또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p> <p>■ 치료보호법에서는 준용대상에서 행형법은 제외하고 정신보건법을 추가하였으나, 사회보호법 규정대로 준용</p> <p>■ 사회보호법 처럼 “벌칙” 관련 규정은 별도의 장으로 규정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 154조·제233조 또는 제234조(허위작성 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)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.</p>	<p>는 손괴의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③보호치료를 집행하는 자가 피보호치료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④보호치료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⑤타인으로 하여금 보호치료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⑥보호치료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보호치료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 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⑦보호치료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 154조·제233조 또는 제234조(허위작성 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)의 죄를 범한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폐지법률)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.</p> <p>제3조(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)</p>	<p>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.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.</p> <p>⑧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보호치료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</p>	<p>■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따로 제정하므로 폐지 관련 부칙 조항 불필요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4조(치료감호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5조(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8조제2항</p>	<p><u>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치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제3조(치료감호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치료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.</u></p> <p><u>제4조(사회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·결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치료심의위원회의 심사·결정으로 본다.</u></p> <p><u>제5조(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0</u></p>	<p>■ 사회보호위원회 및 그 결정에 관한 경과규정 신설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.</p> <p><노회찬의원 발의법안>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2.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 내지 제289조·제292조(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·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97조 내지 제303조·제305</p>	<p>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보호치료심의위원회로 본다.</p> <p>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보호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</p>	<p>■ 신설</p> <p>■ 삭제</p> <p>○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(현행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) 제67조제1항제2호는 사회보호법 별표 기재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저지른 자를 예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므로 사회보호법폐지법안 부칙에 규정함이 상당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조의 죄,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·제338조 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·제3조제3항·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)의 죄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·제5조의4·제5조의5의 죄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</p> <p>②국민연금법중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5.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 치료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</p>	<p>①국민연금법중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u>5.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치료시설에 수용중인 경우</u></p>	<p>■ 경과규정에 의해 보호감호시설도 유지되므로 보호감호시설 관련 규정도 존치</p>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③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5.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</p> <p>④방송법중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6.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</p> <p>⑤보안관찰법중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·금고·구류·노역장유</p>	<p>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5. <u>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치료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</u></p> <p>③방송법중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6. <u>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치료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</u></p> <p>④보안관찰법중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③보안관찰처분의 <u>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·금고·구류·노역</u>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치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.</p> <p>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</p>	<p><u>장유치 중에 있는 때,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때 또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치료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.</u></p> <p>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u>제3조제3항을</u></p> <p><u>③보호감호소·보호치료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·보호치료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.</u></p> <p><u>제5조 2의2목을</u></p> <p><u>2의2. 보호감호소·보호치료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</u></p>	

치료보호법안	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	비 고
<p>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제17조를 삭제한다.</p> <p>⑧정기간행물등에관한법률중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4.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</p> <p>⑨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(설치 및 임무) 구치소 및 교도소(이하 "교정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</p>	<p>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5. <u>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,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치료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</u></p>	<p>■ 삭제</p> <p>○ 성폭법 제17조는 성폭법상의 일부 죄명을 보호감호대상 범죄로 본다는 내용이므로 사회보호법폐지법안 부칙에 규정함이 상당</p> <p>■ 법률명칭 변경</p> <p>■ 삭제</p> <p>○ 보호감호 관련 규정이므로 삭제</p>